

## 법무매거진

저수지 24m 옆 가축분뇨시설,  
대법원 '설치 불허는 관할청 재량'



〈대법원 깃발〉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저수지 근처에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뚜렷하게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청 재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전남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 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4월 9일 밝혔다.

A씨는 애초 가축분뇨를 저장했다가 위탁 업체가 수거해가는 시설을 지으려고 했다가, 분뇨를 분해해 배출하는 시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2018년 10월 강진군에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진군은 이 시설 예정지가 주민들이 농업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와 2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환경오염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분뇨를 직접 분해·처리하는 방식은 환경피해 우려가 적다며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저수지가 인접한 만큼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강진군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분뇨를 그대로 저장했다가 수거하는 방식은 분해·배출 방식보다 유출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며 A씨의 시설 설치 신청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이 사용하는 저수지가 근접한 만큼 유출 가능성을 우선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액비화 처리시설이 기존 저장탱크 방식에 비해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작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또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시 입을 환경상의 피해가 막대한 데 원심이 사후 규제 수단을 들며 환경 오염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영역’이라며 “원심은 재량적 판단이 합리성이 없었는지에 대해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 책임을 물어 청구를 배척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출처/조선일보)